

사립 유치원에 입학 을 고려 하시는 분에게

# 사립 유치원 보조금 등

신주쿠구에서는 구내에 주소가 있고,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자 분들에게  
입학료·보육료 보조 등을 지급합니다.

입학료 보조금 80,000 엔 한도

(소득제한 없음)

보육료 보조금 등 소득에 따라  
보조금액이 다릅니다.

(보조금액은 뒷면 참조)

신청방법은 입학 예정인 유치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등 관련 문의처



신주쿠구 교육위원회사무국 학교운영과 유치원계  
(우)160-8484 신주쿠구 가부키초 1-5-1 (구청 제1분청사 4층)  
전화 : 03-5273-3103 (직통) FAX : 03-5273-3580

2024년 7월 작성

# 사립 유치원 보조금 등 안내

## 【보조금 등 대상자】

사립 유치원 및 도교도 인정 유치원 유사시설에 다니는 원아(만 3세, 3세, 4세, 5세 아동)를 둔, 신주쿠구에 주소(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가 있는 보호자에게 입학료와 보육료를 보조해 드립니다.

## 【보조금의 종류】

### 1 입학료에 대한 보조금-----80,000 엔 한도(소득제한 없음)

해당 연도에 입원하여 입학료를 납부한 분이 대상입니다. 교부는 연내 1회 실시됩니다.  
단, 한도는 유치원에 납입한 입학료 금액 이내.

### 2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①시설 등 이용비 (정부의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와 ②보육료 보조금(도·구의 제도, 소득제한 있음) 2 종류.

각 보조금 등의 합계액은 아래 표 참조. 단, 한도는 유치원에 납입한 보육료 금액 이내.

연도 중간에 입·퇴원한 경우 또는 신주쿠구로 전입·신주쿠구에서 전출한 경우 금액은 일할 계산합니다.

연수입 기준 ※2 4인 가구 (급여 수입으로 부부와 자녀 2명)를 가정함.	시설 등 이용료·보육료 보조금의 합계액(연간 금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형·누나가 1명 있는 세대) ※1	셋째 자녀 이후 (형·누나가 2명 이상 있는 세대) ※1
생활보호 세대 등	562,800 엔	562,800 엔	562,800 엔
약 270 만엔 미만 (구·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포함)	526,800 엔	562,800 엔	562,800 엔
약 360 만엔 미만	480,000 엔	501,600 엔	562,800 엔
약 680 만엔 미만	480,000 엔	480,000 엔	555,600 엔
약 730 만엔 미만	480,000 엔	480,000 엔	548,400 엔
약 1,000 만엔 미만	480,000 엔	480,000 엔	488,400 엔
약 1,000 만엔 이상	480,000 엔	480,000 엔	480,000 엔

※1 다자녀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범위는 보호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2 연수입 기준은 참고용입니다. 보조금액은 구시정촌민세의 소득할 과세액(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차입금 등의 특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의 세대 합산액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주쿠구의 세율과 다른 시에서 전입했거나 신주쿠구의 세율과 다른 시에서 단신 부임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신주쿠구의 세율로 계산하여 판정합니다.

- 자녀·육아지원 신제도로 이행한 사립유치원 및 도교도 인정 유치원 유사시설에 다니는 원아는 시설 등 이용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 등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부모 세대 등에 해당하는 세대는 세대 소득에 따라 상기 금액보다 증액될 수 있습니다.

### 3 시간외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일액 450 엔 (월액 11,300 엔) 한도

구에서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단, 유치원에 납부한 시간외 보육료의 금액까지

※만 세 아동은 구·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구·시·정·촌민세 과세 세대의 둘째 자녀부터 대상입니다.

## 【지급 (입금) 시기】

- 10월말 경...입원료에 대한 보조금,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시간외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4~8월분)
- 2월말 경...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시간외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9~12월분)
- 5월말 경...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시간외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1~3월분)

## 【기타】

- 미신고 등으로 구·시·정·촌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보육료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보조 대상 및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